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규정함

다. 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9. 1. ~ 10. 12.)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
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
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2.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이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인증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업무 변경신청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소프

트웨어가 영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품질인증서 교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1부
2. 별표 3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의 자료를 점검하고,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의 연장을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과 제5항에 따른 심의 등 프로세스 인증의 신청과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2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④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경력등을 유지·확인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관리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전자문

서와 사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⑥ 그 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된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승인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및 별표 6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7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된 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시험의 의뢰 등)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를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절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을 유지·관리 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와 사본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1.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2. 기타 실적 또는 실적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유지·관리를 원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와 사본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제출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제출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서

2. 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신청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에 관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실적 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2.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

3.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⑦ 그 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요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28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인증등급이 1등급인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201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 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와 교육수료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와 교육수료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와 교육수료증을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서와 교육수료증으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본다.

②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제1항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경력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로 본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3항의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5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5조제1항 관련)

조직 및 인력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 적합한 조직 및 10명 이상의 시험인증 전문인력 보유
설비 및 환경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시험장비 보유
평가방법	소프트웨어의 유형별(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등) 평가모델 보유

[별표 2]

인증마크(제8조제2항 관련)

1. 도안모형

<p><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p> <p style="text-align: center;">1등급</p> 	<p>1. 소프트웨어의 명칭 :</p> <p>2. 인증기관의 명칭 :</p> <p>3. 인증번호 :</p> <p>4. 인증 등급 :</p> <p>5. 인증받은 자의 상호 :</p>
<p><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p> <p style="text-align: center;">2등급</p> 	<p>6. 제조연월일 :</p>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시는 양각색인·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소프트웨어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인증번호의 부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A-BBBB

1) AA : 인증연도

2) BBBB : 일련번호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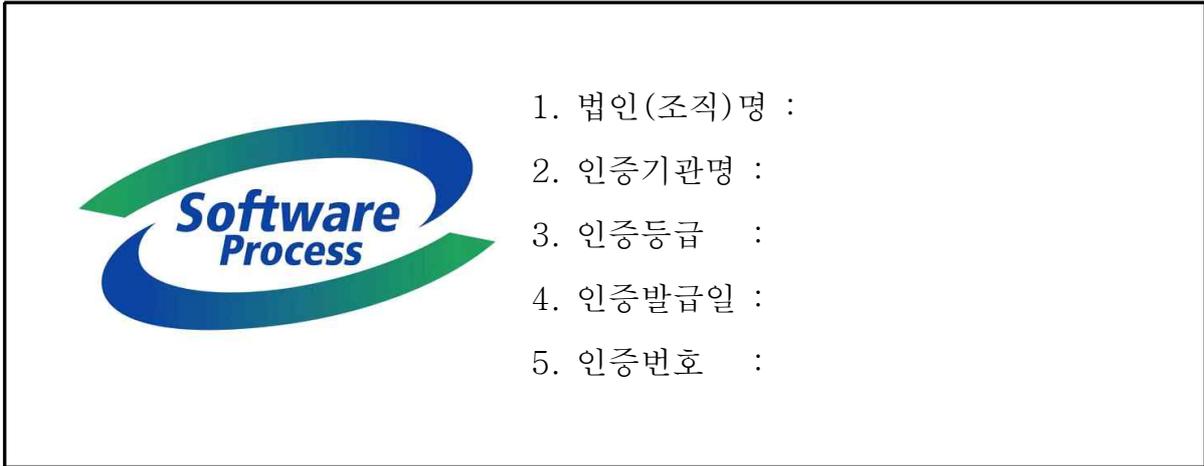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p>조 직</p>	<p>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조직(문서관리, 접수 및 인증서 발급 등) 2. 인증심사조직(심사팀 구성 및 운영 등) 3. 성과관리조직(인증심사 결과분석, 인증심사절차 개선 등)
<p>인 력</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경력 5년 이상 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3.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p>운영절차</p>	<p>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별 운영절차를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신청 및 접수 절차 2. 심사팀 구성 및 심사절차 3. 인증심의 방법 및 절차 등

[별표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0조 관련)

1. 도안모형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번호의 부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A-BB-C-DDDD

- 1) AA : 인증기관 식별 고유번호
- 2) BB : 인증년도 (예시 : 2008년 → 08)
- 3) C : 인증범위 (예시 : 신청기관 조직 전체 → 전, 일부 조직 → 부)
- 4) DDDD : 일련번호

다. 일련번호는 인증기관별 인증발급 순서대로 부여한다.

[별표 5]

수수료(제13조제4항 관련)

신청 내용	수수료	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록	25,000원	최초 1회
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연 5,000원	연간 (최초 1회 면제)
3.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2,000원	1부당

[별표 6]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p>1. 조직 및 인력</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p> <p>가.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또는 품질성능시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인력 6명 이상</p> <p>나.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인력 4명 이상</p>
<p>2. 시험방법</p>	<p>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야별 시험모형을 보유할 것</p>

[별표 7]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1. 일반현황

- 가. 법인명: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적는다.
- 나. 대표자: 한글, 한자 및 영문 이름을 적는다.
- 다.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 포함)를 적는다.
- 라. 설립 및 등기일자
- 마. 자본금

2. 기관소개

- 가. 설립목적 및 연혁
- 나. 비전 및 목표
- 다. 주요기능: 정관에서 정한 주요 업무내용을 적는다.
- 라.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을 도식화하여 부서별 기능을 기술하고, 임·직원, 시험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이름, 직위, 생년월일, 경력, 자격 및 주요업무내용 등을 적는다.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업무 추진계획

- 가. 추진목적
- 나. 추진전략
- 다. 주요 추진내용
- 라. 수행방안
 - 1) 시험업무 추진조직 운영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문의, 접수 및 처리, 결과서 발급, 시험실시, 시험결과 분석·관리 등을 위한 행정, 시험, 성과관리조직의 운영방안을 적는다.
 - 2)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 확보방안: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을 위한 품질성능 평가시험 인력의 확보방안을 적는다.

3)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관리방안: 시험 신청인의 등록·관리, 시험 결과의 심의, 시험 수수료, 시험 결과서 발급·관리, 시험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관리사항을 적는다.

마. 기타 추진업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내용을 적는다.

바. 기대효과

[별표 8]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신 청 내 용	수 수 료
1.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 (신규)	5만원
2.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 (변경)	3만원
3.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재발급	무료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관리신청	무료
5.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증명서 발급	2만2천5백원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지정번호 제 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서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위의 기관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지정 [] 지정변경 신청서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변경 시 해당사항만 기재)	진흥시설주소				
	진흥 시설 규모	전체면적	m ²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m ²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m ²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m ²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수	개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수	개	지원시설수	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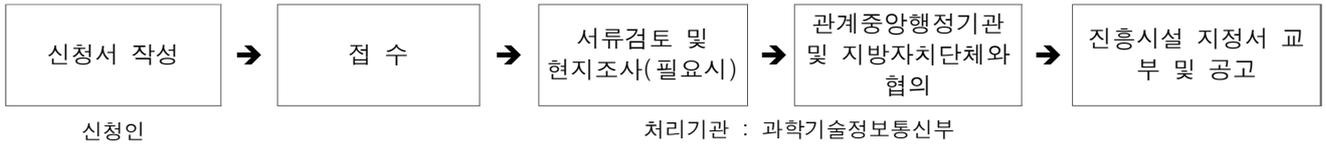
첨부서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지정번호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 시설명 :
- 지정면적 : m² (건축물면적 : m²)
- 시설의 소재지 :
- 조성사업자 성명 :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 지정 변경 신청서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진흥단지 위치	외 필지
---------	------

단지 조성 규모	대지	전체면적	㎡
	건축물	건축물의 수	개
		건축물 연면적의 합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입주현황	총 사업자 수	개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개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수	개
	기반시설 수	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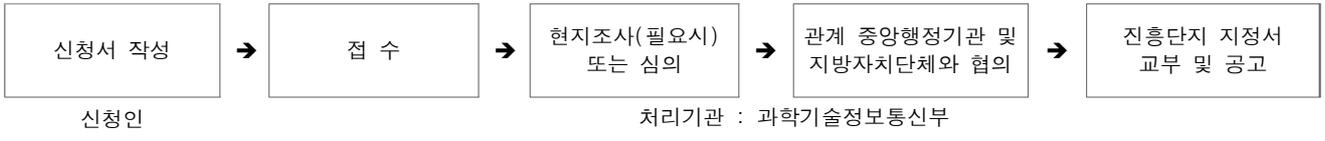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지정번호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 단 지 명 :
- 지정면적 : m² (건축물면적 : m²)
- 단지의 소재지 : 외 필지
- 단지지정자 성명 :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품질인증 대상등급	[] 1등급 [] 2등급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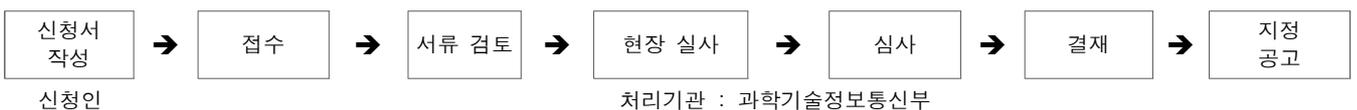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인증업무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업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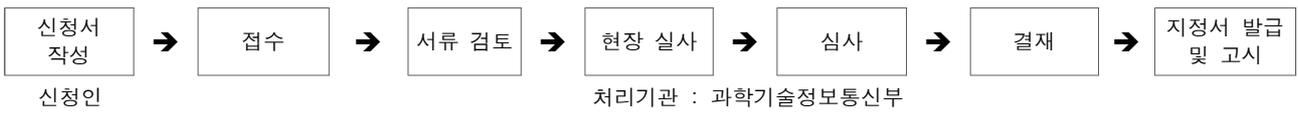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무 담당	성명
	팩스	전자우편주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 등급 [] 1등급 [] 2등급	
	명칭	버전
	용도	
제조사	상호	제조국
	주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제 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oftware Quality

상호 또는 성명 :
Name of Company / Name of Applicant

소프트웨어의 명칭 :
Name of Software

인증등급 :
Certification Level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o.

제조사 및 제조국가 :
Manufacturer and Country of Manufacture

인증연월일 :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
Additional Information

위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the quality of the foregoing software has been certified under Article 7.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oftware Promo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President of the Software Quality Certification Body
Republic of Korea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인증 신청 기업 현황	법인명	(한글)	대표자명	(한글)		
				(영문)		
		(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설립 년월일	자본금	역원	업태	업종	
종업원	경영간부	명	기술직	명	계	명
	사무직	명	기타	명		
담당자	부 서 명			전화번호(Fax)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인증 신청 정보	인증신청등급	[] 2 등급	[] 3 등급
	대상조직		
	심사희망시기	1차 희망 : 년 월 일	2차 희망 : 년 월 일
	심사수행장소		

기타 사항	타 인증획득사항	인증명	등급	일자
		인증명	등급	일자
		인증명	등급	일자
	기타 인증획득 준비활동			

귀 인증기관의 인증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
제출서류	
품질인증기관 담당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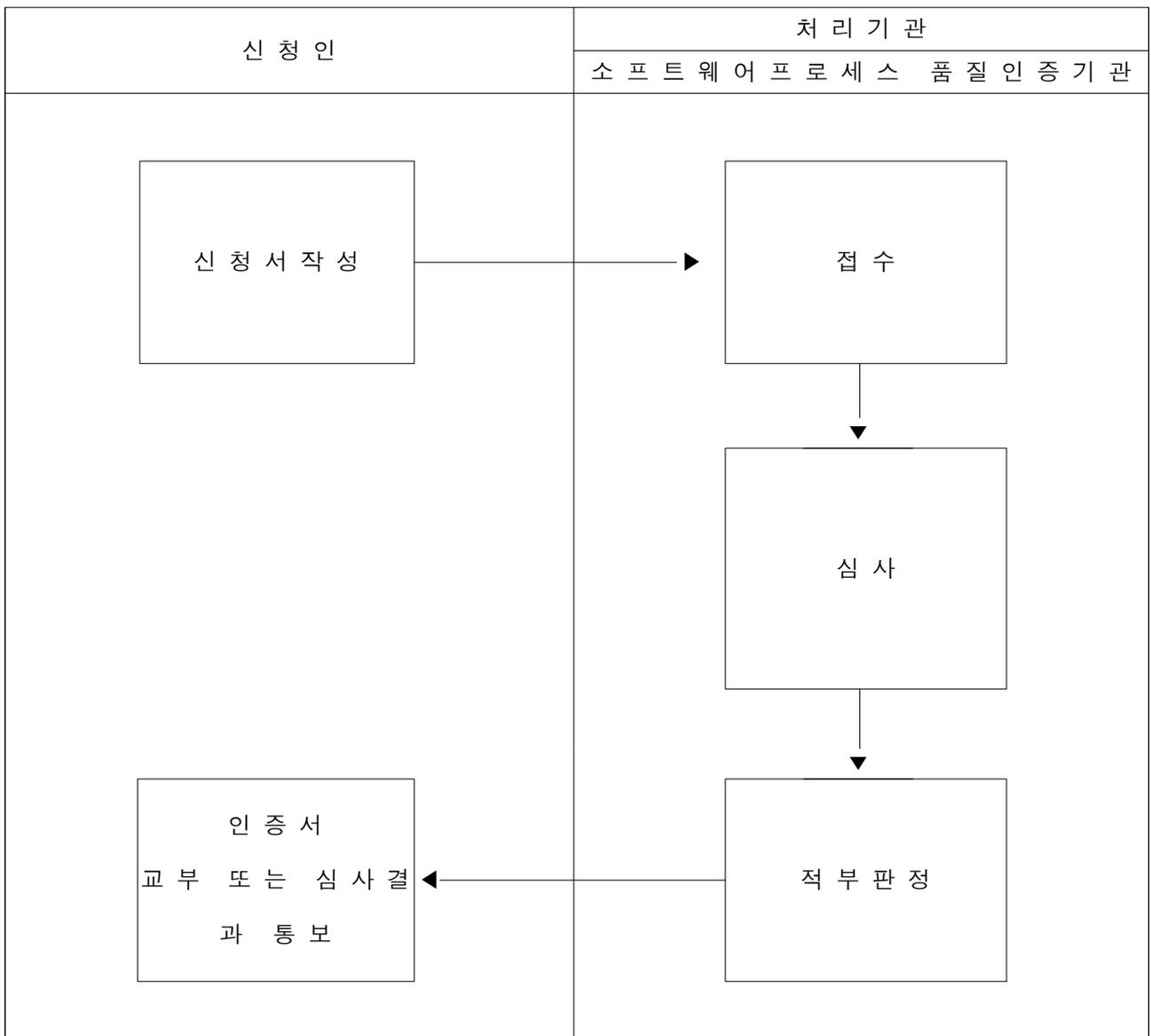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품질인증기관 담당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oftware Process Quality

1. 법인(조직)명 :
Name of Organization

2. 대 표 자 :
Representative

3. 소 재 지 :
Address

4. 인증 번호 :
Certification No.

5. 인증 등급 :
Certification level

6. 인증 기간 : 20 . . . ~ 20 . . .
Period of Certification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인증합니다.

I hereby certify the quality of the foregoing software process under
Article 21.3 of the Software Promotion Act and Article 11.3 of its Enfo
rcement Decree.

년(Year) 월(Month) 일(Day)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President of the Software Process Quality Certification Body
Republic of Korea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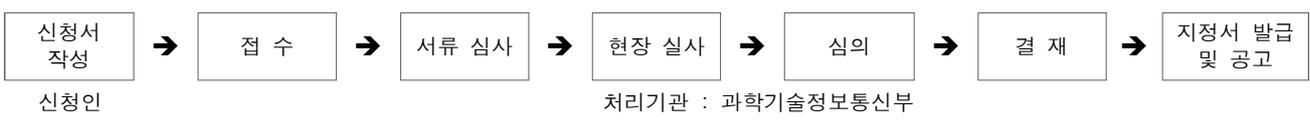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제 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대 표 자 :
5. 지정기간 : 20 . . . ~ 20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 (생년월일 : . . .)
2. 소 속 :
3. 교육기관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20 . . . ~ 20 . . . (시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

직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 신규 [] 변경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현 근무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소재지			

근무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업무	부서/직위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교육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상훈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

연번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1		~				
2		~				

※ 각 경력항목 초과 시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경력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경력

연번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성명	부서	연락처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1. “담당업무” 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확인자” 는 확인서를 발급한 해당 회사의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소재지						
근무경력	확인여부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교육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			
상훈	수여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	확인여부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유의사항

1. 경력관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은 “확인여부” 란에 “미확인” 으로 표시합니다.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정신청사항	[]근무경력 []기술자격 []학력 []교육 []상훈 []기술경력	

신청사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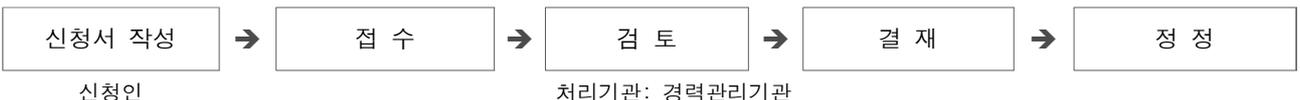
경력관리기관의 장 귀하

증명서류	정정신청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경력의 신규·변경신청과는 달리 이미 확인된 경력에 대한 정정(오기, 착오, 누락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 등)사항에 대한 신청입니다.

처리절차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하도급 거래 계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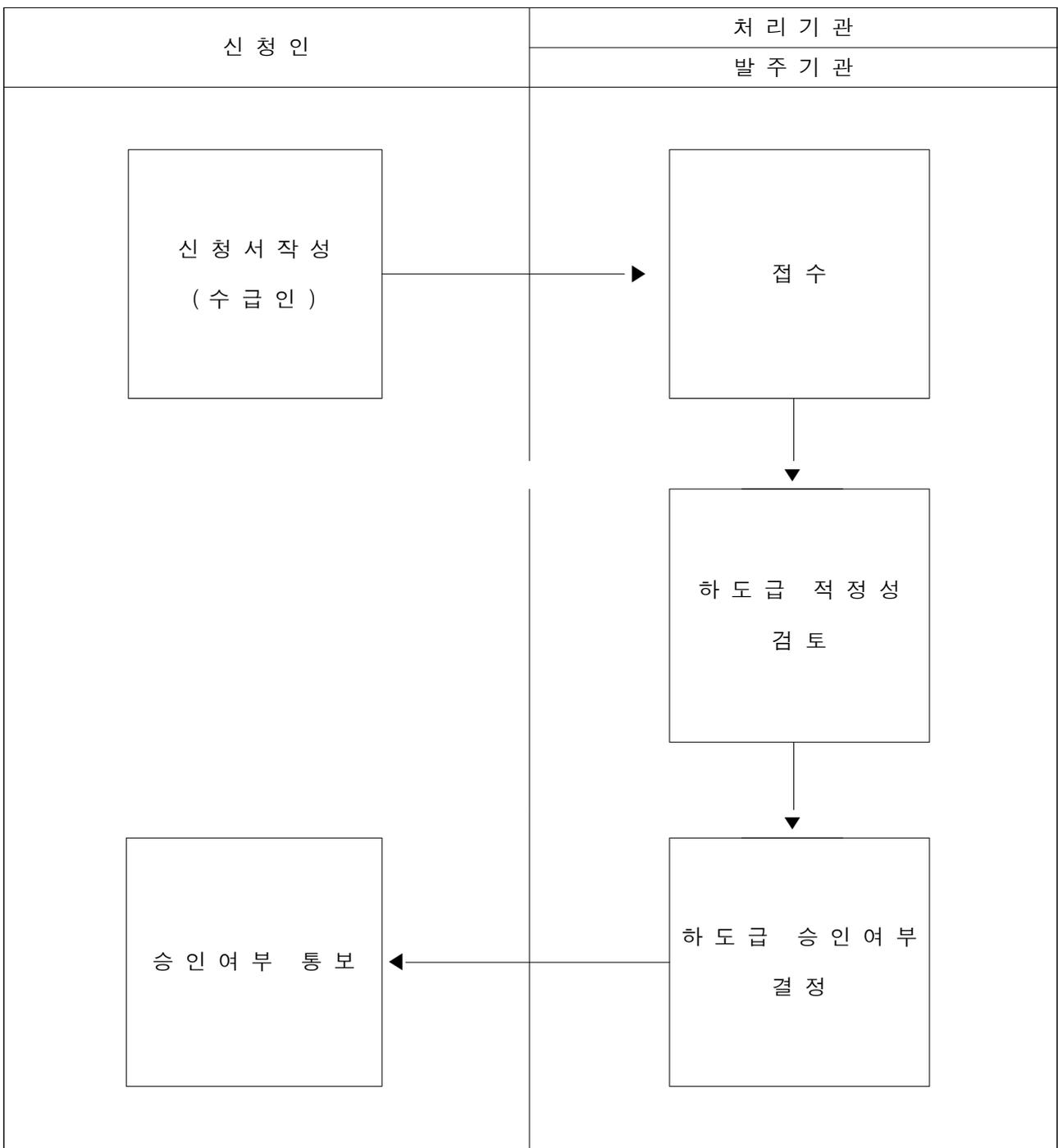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부터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 역 및 해결 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영 별표 2 및 별표 6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별표 7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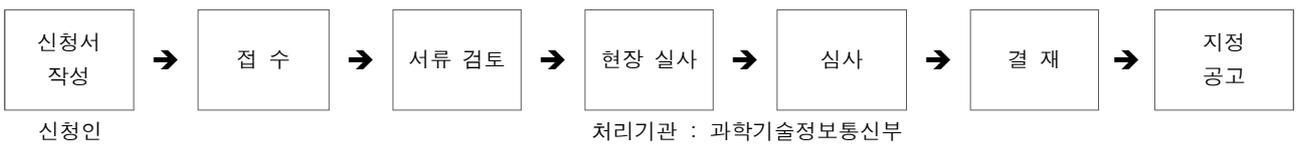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사업 내용	입찰공고 명		공고번호		사업금액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부터	. . .

의뢰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평가시험 대상 제품정보(필요 시 별지 사용)

순번	회사명	제품명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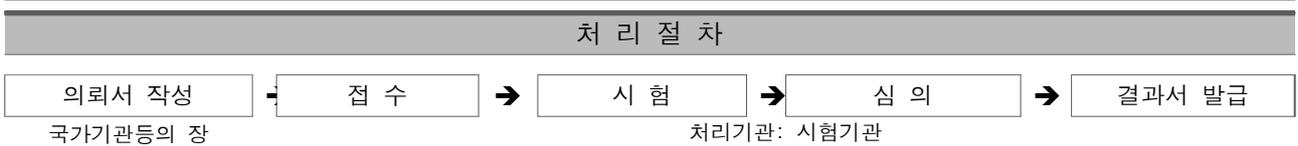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증명서류	1. 증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 기타 신청 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해당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별표 8] 에 따른 금액
사업자실적 관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해당 사업자에 한함.) 2. 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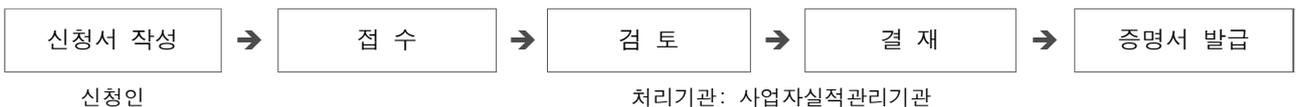
본인(대표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실적관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회사명	사업자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작성 방법

1. 최초/변경 신청에는 신규/변경 신청을 각각 선택합니다.
2. 사업분야는 실제 사업을 경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공고 사업의 입찰 참여 시 부여되는 업종코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426)
 -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1469)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3.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으로 기재합니다.
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 내 상시종업원수를 적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상시종업원 중에서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를 적습니다.
8.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적습니다.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적습니다.
10.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양도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칸에 √ 체크합니다.)
11. 담당자는 회사의 신청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12.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신청번호:

발급번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확인일자:

7. 사업분야: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 최근 결산 자료로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 “확인불가” 로 명시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 변경 관리신청서 [] 완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일반현황	사업명	원사업명	계약번호		
		사업명			
	수급형태 [] 단독수급 []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수급				
	산업분야		사업분야		
작업장소	[] 발주기관내부 [] 발주기관인근 [] 계약대상자자체(원격지) [] 발주기관내외부(병행)				
발주자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	[] 공공 [] 민간	소재지		
	실수요기관				

수급자현황	원수급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 현황	총 계약금액(원)		공동수급자수	지분율	
계약현황	계약기간(년월일)		계약금액(원)	이행완료일	최종매출액
	~				
보증서 발급현황	보증 종류	보증 기관	보증서 번호	발급일	보증 금액

담당자	성명/직책	전화 번호	전자 우편
-----	-------	----------	----------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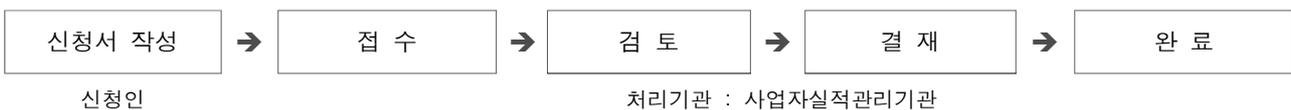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증명서류	1. 계약서 2. 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신청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합니다.	수수료 [별표 8] 에 따른 금액
-------------	--	--------------------------

작성 방법

1. 신청서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신청이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규” 를 선택하십시오.
 - 신규신청 이후에 2차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 을 선택하십시오.
 -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신청하실 경우 “완료” 를 선택하십시오.
2. 신청회사의 정보(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3. 사업일반현황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사업명” 은 하수급의 경우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의 계약을 맺은 사업명(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명” 은 신청인과 계약자(단독/공동수급의 경우 발주자) 간의 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계약번호” 는 원수급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급형태” 는 단독수급 : 발주자와 단독계약, 공동수급 : 2개 이상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 체결, 하수급 : 원사업자가 원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계약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기재합니다.
 - “산업분야” 및 “사업분야” 는 SW사업자 실적 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작업장소” 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4. 발주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을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 “실수요기관” 은 발주기관과 실수요기관이 틀린 경우에만 기재하며, 실수요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지역” 은 발주자의 지역을 기재합니다.
5. 수급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수급자 회사명” 은 하수급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를 기재합니다.
 - “계약상대자” 는 계약서 상의 계약상대자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단독/공동수급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원수급자와 같을 경우 동회사명을 기재합니다.
6. 공동수급현황은 공동수급일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총계약금액” 은 공동수급자 전체의 총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동수급자 수” 는 신청회사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지분율” 은 총 계약금액 중 신청자의 지분율(계약서 상)을 기재합니다.
7.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계약기간” 은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액” 은 본 사업의 계약금액(공동수급인 경우 신청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행완료일” 은 사업의 이행완료일자(검수완료일 등)를 기재합니다.(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최종매출액” 은 이행완료된 사업인 경우 본 사업으로 발생한 최종매출액(부가세 별도)을 기재합니다.
8. 보증서발급현황은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현황을 기재합니다.
9. 담당자는 신청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0.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용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